

<붙임 2>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 <개정 2012.8.2>

**근로능력평가용 진단서(작성 예시)**

진단 대상자	성명	김 00	생년월일	1966.12.7	성별	남
	주소	서울 동대문구 12로 34			전화번호	02-123-4567

진단 질환명	평가대상 질환명(1)	근골격계	상세 질환명(1)	우측 발목 관절 절단	KCD 분류번호	Y83.5	진료기간	13.2.5~13.2.5
	평가대상 질환명(2)	호흡기계	상세 질환명(2)	알레르기성 천식	KCD 분류번호	J45.0	진료기간	05.07.16~13.2.5(현재)

진단 질환명	평가대상 질환		
	① 근골격계 ④ 감각기능계 ⑦ 소화기계 ⑩ 혈액 및 증양질환계 ※ 상기 질환에 속하지 아니하더라도 가장 근접한 평가대상 질환 중 한 개를 선택하여 평가	② 신경기능계 ⑤ 심혈관계 ⑧ 비뇨생식계 ⑪ 피부질환계	③ 정신신경계 ⑥ 호흡기계 ⑨ 내분비계

근로능력 평가내용	평가대상 질환	평가 내용	질환 고착여부
	질환명(1) 질환명(2)	우측 다리를 발목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은 상태 천식으로 지속적 약물복용 치료 유지가 필요하고, 치료 중단시 질병악화가 예상됨. 주기적인 정밀검사 필요	예 <input checked="" type="checkbox"/> , 아니오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 아니오 <input checked="" type="checkbox"/>

※ 보건복지부장관이 근로능력평가의 기준 등에 관하여 고시한 의학적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재하되, 단계는 기재하지 않습니다.  
 ※ 평가대상 질환의 '고착여부'에 대해  하고, 고착이 있을 경우 고착 증상에 대해서도 '평가내용'란에 기재

치료 경과내용	주요 증상 및 발현 횟수	우측 다리 발목관절 절단상태, 지속적 통증 기침, 호흡곤란, 야간발작이 1주일에 1번 정도 반복
	주요 치료 내용	20년 전(시기 미상) 우측 다리 절단수술(타병원) 후 절단부 통증으로 약물치료 중 폐기능검사상 평상시 1초간 강제호기량이 55%, 기관지확장제 및 항염증치료제 (000정, 000정) 지속적 투여, 호흡기 치료(증기흡입치료) 중. 흉부X-ray 검사
	기타 특이사항	지체장애(하지 절단장애) 4급 상지 절단의 경우 본 의원의 진료이력 없으나 고착된 상태로 사료되어 소견서, 사진 첨부함. 흉부 X-ray검사 및 폐기능검사 결과 첨부함.

향후 치료계획	1.관찰필요[ <input type="checkbox"/> ] 2.통원치료나 약물치료 필요[ <input checked="" type="checkbox"/> ] 3.적극적인 입원이나 수술필요[ <input type="checkbox"/> ] 4.기타[ <input type="checkbox"/> ] ※ [ <input type="checkbox"/> ]에는 해당되는 곳에 <input checked="" type="checkbox"/> 표를 하며, 별도 치료계획이 있을 경우 기타 란에 내용을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재진단 필요사유	증상의 변화에 대한 관찰 필요(호흡기계)	재진단 시기	2014년 2월 5일
----------	------------------------	--------	-------------

발급기관	의료기관명	00 병원	전문과목	내과
	소재지	서울 동대문구 34로 56	전화번호	02-345-6789
	면허번호 (전문직 자격번호)	제12345호	성명	김의사 김서희(표본인)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 제35조제1항제2호에 따라 위와 같이 근로능력평가용 진단서를 발급합니다.

2013년 2월 5일

의료기관 **00 병원** 직인

- 유의사항
1. 진단 및 근로능력평가용 진단서 발행 시 진단받는 사람이 본인임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2. 진단대상자 및 평가내용 등을 투명테이프 처리하여 발급하되, 부득이한 경우 봉투의 봉합부분에 의료기관의 간인을 찍습니다.
  3. 평가 내용란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7조제4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의학적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합니다.
  4. 치료경과 내용란은 주요 치료내용, 특이사항 등을 상세히 기재하여야 합니다.
  5. 근로능력 의학적평가와 관련한 사항을 사후에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